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330
----------	-----

제출연월일 : 2005년 7월 29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청주시와 청원군 양지역이 통합에 합의하고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서가 제출됨에 따라,
- 주민의 대의기관인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청주청원에서 건의한 건의서를 제출하기 위함.

2. 구하고자 하는 의회 의견

-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실시에 대한 의견

3. 관계 법령 발췌 : 따로붙임

4. 기타 참고자료 : 따로붙임(청주시·청원군 건의서)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第4條 (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 ①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은 宗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할 때에는 法律로써 정하되, 市·郡 및 自治區의 管轄 區域 境界變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하거나 그 名稱 또는 區域을 變更할 때에는 관계地方自治團體의 議會 (이하 "地方議會"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投票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31, 2004.1.29>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조 (관계지방의회)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 주민투표법

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5. 8. 11(목)
제242회 임시회

-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실시 건의에 따른 -

의 전 서



충청북도의회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의견서

충청북도지사가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05. 7. 28.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제241회(2005. 8. 1) 및 제242회(2005. 8. 11)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 및 여론조사와 청주시·청원군의회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충청북도의회의 통합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통합 반대 의견 : 재석의원 26명 중 17명

- 오창·오송단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청주권은 10년 이내에 인구 100만명이 넘는 거대도시 형성이 예측되므로, 이 경우 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어 향후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충청북도의 인구 50%와 경제력 70%가 집중하게 되어 비청주권은 공동화 현상과 함께 청주권과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상대적 박탈감이 증폭되어 지역간 소외감은 더욱 더 확대 될 것이다.

□ 통합 찬성 의견 : 재석의원 26명 중 9명

-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체계적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이 강화되어 충북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 각종 공공시설의 건립과 유지 관리는 물론 청주·청원의 독자적인 개발사업 추진으로 파생되는 중복투자 방지와 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또한 동일 생활권역에 거주하면서도 그 동안 분리되어 불편하였던 점이 대부분 해소되어 지역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주민투표에 따른 의견

- 행정자치부에서 청주·청원의 통합관련 주민투표 실시가 결정되면 이는 충청북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 현안이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의 이익과 균형발전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 한다.
- 청주·청원 통합은 도내 인구나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등 지역의 불균형 심화가 우려되므로, 장점은 최대화 시키면서 단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의 긍정적·부정적 요소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주민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므로 청주·청원 통합의 제반 사항은 반드시 청주시, 청원군의회는 물론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통합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절차와 순리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결코 정치적으로 이용 되어서는 안 된다.
- 통합과 관련한 제반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 하고 도민이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005. 8. 11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